

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1. 10. 29 선고 2021가단4092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청구의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현국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1. 10. 29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1999. 11. 2. 접수 제1022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인정 근거: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)

별지

부동산 목록

1. 충북 영동군 C 답 990㎡
2. 충북 영동군 D 답 1,167㎡. 끝.

별지

청 구 원 인

1.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소외 망 [E] (2019. 3. 사망) 소유였다가 원고가 2016. 3. 21.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경료한 원고소유입니다.

2. 피고는 1999. 11. 1.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무자 : 망 [E] 채권최고액 : 금 9,500,000원으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1999. 11. 2. 접수 제10225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.

3. 그런데 피고는 위와같이 망 [E] 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1999. 11. 2. 자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고, 따라서 피고의 망 [E] 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로 담보된 채권이 1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,

"담보물권의 부종성"법리에 따라 피고 명의로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무의 소멸로 인하여 원인무효가 되었다고 하겠으므로 피고는 망 [E] 로부터 소유권을 이전 받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줄 의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.

4. 이에 따라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받기 위해 본소청구에 이른 것입니다.

